

부하게 된다.

와인과 증류주의 세율은 리터당 89센트이며 QST(7.5%)도 부과된다. 업소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주류세 대신에 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류에 대해 연방세로는 GST와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알콜의 함량에 따라 다르다.

주류세의 경우도 담배세와 같이 세부담이 낮은 지역으로부터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상당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 소득세제

퀘벡주의 소득세제는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income tax),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 자본세(tax on capital), 고용주의 건강서비스기금부담금(employer contribution to the health services fund)이 있다.

자본세는 민간회사와 상업적 성격의 공사(commercial government corporation)의 자본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capital)이라 함은 불입자본(paid-up capital)을 말한다.

건강서비스기금부담금은 민간법인과 공공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며 과표는 총급여가 되므로 일반급여세(general payroll tax)라고도 한다.

IV. Ottawa시의 재산세 제도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Ottawa시는 시 자체의 재정과 교육위원회(school boards)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징수한다.

재산세는 Ottawa시가 과세하는 유일한 시세이다.

2. 납기(due dates)

재산세는 연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 중간납부: 3.22까지 전년도 재산세액의 50%를 납부
- 최종납부: 6.21까지 납부

3. 납부

재산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납부
전화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화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시 기관(Ottawa Client Service Centres)에 납부